

Tax News Flash

- Transfer Pricing & Customs

March 4th, 2024

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.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/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01 이전가격

그리스: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신규 신고의무에 대한 지침 (DAC7)

고시(Decision) A.1016/2024는 그리스 법률 제5047/2023호에 반영된 EU DAC7 (Council Directive (EU) 2021/514 (DAC7))의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.

상기 법률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판매자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여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, EU회원국 세무당국 간에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본 고시에 따르면 2023년에 대한 필수 정보제출 또는 '내용없음' 신고(nil reporting) 제출기한이 2024년 2월 26일(연장 전: 2024년 1월 31일)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.

또한, 본 고시에는 각종 DAC7 관련업무를 담당할 그리스 세무부처들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, 그리고 신고의무 제외/면제(exclusion/exemption)를 신청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- 신규 신고의무 '면제'를 받고자 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신고기간과 관련하여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2023년의 경우, 면제 대상 입증 서류의 제출 기한은 2024년 2월 26일입니다.
- 다른 플랫폼 운영자가 동일한 정보를 그리스 당국이나 다른 회원국의 당국에 이미 제출했다는 이유로 신고의무의 면제를 요청할 경우, 해당 운영자는 제출 연도의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다른 회원국 내 신고의무 대상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그 회원국에서 신고하기로 결정하고, 요구 사항을 충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회원국의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, 그리스 내 신고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대상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, 해당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 기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'정보없음'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관할 세무 당국에 정보를 제출할 시 반드시 EU 규격에 따라 xml 형식의 파일을 전송해야 합니다.
- 플랫폼 운영자는 신고의무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 플랫폼 운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정보 제출 시스템(Mutual Data Submission System)에 등록해야 합니다. 2023년에는 상기 등록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며, 2023년 귀속 신고기한(2024년 2월 26일 이전)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
벨기에: EU 국가별보고서(CbyC) 공시지침 도입

2024년 1월 26일, EU 국가별 보고서 공시지침(EU Public Country-by-Country Reporting Directive 또는 EU CbCR 지침)이 벨기에 자국세법에 시행하는 [법안](#)이 현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.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본 법안 내 규정내용은 대부분 EU CbCR 지침에도 부합합니다.
- 국가별보고서가 상업등기소에 게재되어 EU 소재 제3자들에게 무상(free of charge)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자국 내 회사 또는 지점에게 자사 웹사이트상 국가별보고서 게재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.
-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벨기에 국립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벨기에 현지 국가별보고서 규정에서는 EU에서 지정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(non-cooperative jurisdictions)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벨기에 정부가 조세피난처(tax haven)로 지정한 관할지역에 소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 합산데이터(aggregated data)가 아니라 세분화된 데이터(disaggregate data)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- 상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EUR 50 ~ EUR 10,000의 과태료(fine)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부정한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벨기에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2024년 6월 22일 또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02 국제조세

최신예규/판례: 조심 2022 중 6451 (2023.12.14)

제목: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, 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회사이고, 미국자회사가 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, 실질귀속자가 청구법인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(각하)

1)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

- 청구법인 미국자회사는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의 상장회사인 ○○○(이하 “○○○” 또는 “미국모회사”)의 자회사로서(미국모회사가 미국자회사의 주식 100%를 소유) ○○○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.
- ○○○는 2018.2.13. aaa 주식회사(이하 “aaa”)와 2018.1.1.~2022.12.31. 기간 동안 미국모회사 및 그 계열사 보유 특허권의 사용권을 aaa에 부여하는 계약(이하 “쟁점특허사용계약”)을 체결하였고 aaa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15%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.
- 이후 청구법인들은 2021.10.7. 2018사업연도부터 경정청구일까지의 특허권 사용료(이하 “쟁점특허사용료”)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자회사가 아닌 ○○○(이하 “○○○”)이므로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한·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하고,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없으므로 원천징수한 세액 ○○○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하였으나, 처분청은 이 경정청구들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.5.11.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.

2) 쟁점

- ① 청구법인 ○○○의 당사자적격 여부
- ② ○○○이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3)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

청구법인 주장	처분청 의견
[쟁점 1]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는 미국자회사이다. - 처분청은 경쟁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의 미국자회사 명의로 ○○○로 되어 있으나, 심판청구이유서에는 ○○○ In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명이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나, 미국모회사인 ○○○은 ○○○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자회사인 청구법인 역시 명칭이 ○○○으로 동일하며, 쟁점특허사용계약 당시 주소도 같았다. 이에 미국모회사와 구분하기 위해 ○○○ Inc로 표기하였을 뿐이고 만약 주소 등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보정사항에 불과한 것이다. -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미국모회사는 펜실베이니아법에 따라, 미국자회사는 뉴저지주법에 따라 각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, 쟁점특허사용계약 상의 ○○○은 펜실베이니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쟁점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모회사라는 의견이나, 미국자회사가 뉴저지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근거는 없다. aaa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설립 등록되고 ○○○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자회사이지, 미국모회사가 아니다.	[쟁점 1]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는 미국자회사가 아닌 미국모회사이므로 미국자회사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. -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미국모회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설립된 법인이고, “미국자회사는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법인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,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인 ○○○은 미국자회사가 아닌 미국모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- 미국모회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○○○ CURRENT REPORT(이하 “○○○”)에 따르면, 미국모회사의 상호, 설립 관할권(펜실베이니아), 주소가 모두 쟁점특허사용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점이 확인된다. -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미국자회사와 ○○○ 간에 체결된 연구개발비용분담 계약서 및 미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, 미국자회사의 ○○○(이하 “○○○번호”) 혹은 ○○○(이하 “○○○번호”)는 ○○○이고, 미국모회사의 ○○○번호 혹은 ○○○번호는 ○○○인데, 경쟁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상 기재된 미국자회사의 납세자번호는 미국모회사의 납세자번호인 ○○○이다. 청구법인들은 미국자회사의 미국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, 미국자회사의 ○○○번호가 ○○○로 기재되어 있는바, 이 번호는 미국모회사의법인의 것이다.
[쟁점 2]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(실질 귀속자)는 ○○○이므로, 그 소득에 대하여는 한.아일랜드 조세조약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. - ○○○의 설립 및 미국 외 지역으로의 사업 이전 경위 1) ○○○ 그룹은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전세계적 구조조정 목적으로, 언어·인프라·장소적 위치 등에서 장점이 있는 ○○○을 설립하였다. 2) 미국자회사는 기존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, 전 세계적인 사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○○○을 설립하였다는 점, ○○○ 그룹의 사업 중 미국 이외 지역의 사업은 ○○○에게 이전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미국자회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이외 지역의 고객들은 ○○○ 설립 이후에는 ○○○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, ○○○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“미국 외 지역의” 고객들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. - ○○○은 설립 당시 000미국달러 자본금이 납입되어, 설립 당시부터 충분한 실체를 갖고 있었다. ○○○은 직접 ○○○관련 특허기술을 취득하는 등 미국 외 지역에서의 라이선스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무형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모회사인 ○○○가 보유하고	[쟁점 2] 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모회사이다. - 쟁점특허사용료 계약에 따르면, 미국모회사는 미국모회사 및 그가 지배권을 가지는 미국자회사, ○○○ 등 계열사의 특허에 대하여 aaa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미국모회사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 및 보장하며, 이에 대한 대가로 aaa는 미국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따라서 미국모회사는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반면, ○○○은 위 계약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. - 오히려 미국모회사는 미국모회사가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법인(원천)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쟁청구 및 조세심판청구를 한바 있다(조심 2018중5041, 2019.2.11.). - aaa도 쟁점특허사용계약은 미국모회사 임직원과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○○○소속 임직원이 협상권한을 가지거나 협상과정에서 의미있는 제안,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aaa가 필요로 하는 주요 특허를 미국모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미국모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, ○○○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. - 청구법인은 aaa가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서 ○○○을 대신할 형식적 계약당사자, 즉 명의대여인으로 미국모회사를

는 특허권을 재실시(sub-license)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특허를 보유하면서 라이선싱(license)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 회사로서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.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다도, ○○○은 “한국·일본·중국” 등의 여러 회사들과 활발한 거래를 통해 큰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충분한 실체를 갖추고 있고 aaa 이외에도 ○○○등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각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○○○관련 특허 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며, 이러한 사업 활동의 결과 2013년부터 2017까지 각 ○○○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켰다.

- aaa와의 쟁점특허사용계약 경위

내국법인인 aaa가 ○○○과 특허사용에 관한 사업 논의를 할 당시 aaa는 과거 ○○○그룹 소속의 한 계열회사가 ○○○과 특허사용계약을 하고,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국·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, 국세청에서 아일랜드에 소재한 법인의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인하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및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사례를 들어 아일랜드에 소재한 ○○○과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○○○그룹은 미국자회사 보다 100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강력한 거래 당사자인 aaa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“형식상 계약당사자”를 미국자회사로 하여 쟁점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. 그러나 쟁점특허사용계약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관련 사업 관리는 ○○○에 의해 이루어졌는데, 미국 및 아일랜드에서 모든 상업상, 법률상 및 조세 기록상 aaa와 거래한 실질 당사자는 ○○○이다.

- ○○○ 이사회는 쟁점특허사용계약 체결 이전부터 그 협상 과정을 논의해왔다. ○○○ 이사회는 (i) 2016.11.28. ○○○로부터 “당초 체결된 aaa와의 특허사용계약이 2017.12.31.자로 만료되므로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○○○가 다가오는 12월초에 aaa와 접촉하여 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”는 보고를 받은바 있고, (ii) 2017.3.20. ○○○로부터 “aaa와 기존 특허사용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, 다만 연장 계약의 조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”는 보고를 받고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.

- 쟁점특허사용료의 수령,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·수익 관계

1) 미국자회사와 ○○○ 간의 상호 사용 계약 체결

미국자회사와 ○○○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상호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○○○이 미국 외 지역에서 미국 자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하고 허여할 권리를 갖

구했다고 주장하나, ○○○그룹은 세계 1위의 ○○○소재 업체로서 ○○○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료 및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바, aaa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, 기술의 상당부분을 ○○○그룹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○○○그룹이 aaa보다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.

○○○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아니다.

- ○○○의 2016.11.28.자 이사회 회의록내용을 보면, 청구법인의 설립 전후 모두 aaa와 미국모회사 사이의 계약체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모회사의 임원인 ○○○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○○○의 이사는 ○○○본인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사외이사인 ○○○뿐이어서 사업 보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논의도 없었다.

-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메일은 미국모회사가 어느 한국 기업에게 인광재료의 구매 주문처 및 대금 송금처를 ○○○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인광재료 공급 계약에 관한 것인바,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위 이메일은 그 문구상 구매 주문처의 변경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특허사용계약 내지 계약당사자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.

- 설령 ○○○이 aaa와 청구법인의 계약관계에 일부 관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그룹 간 업무협력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쟁점특허사용료의 이전의무 유무 및 이전 여부

- 2013~2017년에 수취한 특허사용료 관련
청구법인들은 ○○○이 미국자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 산정에 관한 표를 제시하면서 2013~2017년에 미국모회사가 aaa로부터 수취한 사용료가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동 표를 통하여 ○○○에게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aaa가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사용료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바, 미국모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된다.

- 2018년 이후부터 수취한 특허사용료
청구법인들은 2018년 이후 특허사용료를 정산하였다는 증빙으로 2019.3.6.자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, 위 보고서는 그 기재대로 ○○○과 미국자회사 간의 재실시권 계약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재실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미국모회사가 미국자회사에게 사용료를 이전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aaa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미국모회사가 아닌 미국자회사라고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내용과 배치된다. 또한 위 보고서는 ○○○과 미국자회사 사이에 재실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.

도록 하였고, 다만 ○○○은 그 대가로서 미국의 이전 가격(Transfer Pricing)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미국자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다. 2) 미국자회사는 aaa로부터의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을 ○○○과 상호 정산하였다. 쟁점특허사용계약은 ○○○이 보유한 특허권을 미국 이외 지역에서 라이선싱할 권리에 기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미국자회사가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을 수취하게 되었으므로 미국자회사와 ○○○은 이를 상호 정산할 필요가 있었다. 이에 따라 미국자회사와 ○○○은 '미국법과 아일랜드의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이전가격(Transfer Pricing)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된 대가 및 연구개발비용 부담액의 총합'에서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을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오고 있다.	○○○은 독자적인 인적·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- 청구법인은 미국 외 지역(제3국)의 사업관리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○○○을 설립하고 ○○○의 자본금, 매출, 이사회 회의록 등을 들어 ○○○이 법적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○○○의 자본금은 특허권 이전을 위한 자금으로 보이고, 지적재산권 개발에 관한 중요 인프라와 인력은 모두 미국에 소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○○○그룹 전체 매출의 95%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, 2013~2017년 감사보고서상 ○○○의 상근직원이 4~8명 정도에 불과한 점까지 고려하면 ○○○의 법적실체는 기껏해야 미국모회사의 연락사무소 정도이고, 일단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능력이나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 결국 ○○○이 쟁점특허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aaa 와 계약을 체결하고, 쟁점특허사용료를 직접 수취한 미국모회사가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, 또한 이러한 주장이 조약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(대법원 2018.11.15. 선고, 2017 두 33008 판결), 수익적 소유자가 ○○○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(대법원 1994.4.26. 선고, 94 누 1005 판결),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○○○이 aaa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거나, 미국자회사로부터 특허사용권을 부여받으면서 그 가격 산정 시에 aaa 와의 쟁점특허사용료 계약을 고려하였다는 정도의 것으로 내용의 구체성이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관련성이 부족하고, 그 밖에 미국모회사가 aaa 와의 계약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쟁점특허사용료를 사용·향유하지 않은 채 그대로 ○○○에게 이전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.
---	---

4) 판단

[쟁점 1]

- 쟁점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'펜실베이니아주 법'에 따라 설립된 ○○○로 기재되어 있는 점, 미국모회사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○○○에 따르면 미국모회사의 상호, 설립 관할권(펜실베이니아), 주소가 모두 쟁점특허사용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점, 미국 국세청 자료 및 미국자회사와 ○○○ 간에 체결된 연구개발비용분담 계약서에 따르면 미국자회사의 ○○○번호는 ○○○, 미국모회사의 ○○○번호는 ○○○인데, 경정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상 기재된 미국자회사의 납세자번호는 미국모회사의 납세자번호인 ○○○인 점, '미국자회사와 ○○○ 간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상호 사용 계약' 및 '미국자회사와 ○○○ 간의 연구개발비용 분담 계약'에 따르면 미국자회사는 "○○○, Inc" 및 뉴저지 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, 미국자회사가 미국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거주자증명서상 ○○○번호가 미국모회사인 ○○○로 기재되어 있는 점, ○○○ 설립 경위에 관한 내부 자료상 미국자회사는 ○○○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, 우리 원은 청구법인들에게 미국자회사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

서류 예컨대, 미국자회사의 정확한 회사명과 ○○○번호 등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쟁점특허사용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·증명을 위해 첨부된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은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는 미국 모회사로 보이므로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
[쟁점 2]

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○○○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, ○○○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,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○○○의 설립 및 미국 외 지역으로의 사업 이전 경위, ○○○의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, 미국자회사가 한국의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, ○○○ 이사회 보고사항 자료 등으로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가 ○○○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○○○은 쟁점특허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바, ○○○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(조심 2017서576, 2018.8.28., 같은 뜻임)



03

관세

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(시행일자: 2024. 2. 24.)

전략물자 수출입고시 33차 개정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확대

[고시 개정의 배경]

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월 24일자로 대(對)러시아·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33차 개정되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를 목적으로 상황허가 대상 (비(非)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 필요함)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, '23.12.26일(화) 행정예고 하였으며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.

[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]

• 주요 개정사항1 :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 (추가품목 682개)

33차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, 이차전지, 공작기계,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(轉用)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며, 이에 따라 對러시아·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,159개로 확대되었습니다. 주요 추가물품은 공작기계, 항공기부품, 철구조물, 건설중

장비, 리튬이온전지, 리튬이온전지의 부분품, 리튬이온전지 제조에 필요한 탄산리튬 등이 존재하며, 구체적인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고시 별표 제2-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**주요 개정사항 2 : 통제기준의 변경 (HS 코드 및 승용차 배기량 기준 추가)**

상황허가 대상물품의 통제기준이 기존 품명, 기술사양, 금액 기준에서 품명, 기술사양 및 HS 6단위코드 및 배기량기준(승용차)로 변경되었습니다. 통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[표. 통제기준의 개정 전/후의 비교]

품목구분	통제기준	
	개정 전	개정 후
전략물자 관련 품목	품명(기술사양)	품명(기술사양)
일반산업품목		HS 6단위 코드
승용차	미화 5만불 초과	배기량 2,000CC 초과

• **주요 개정사항 3 : 허가지침의 명문화**

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던 對러시아·벨라루스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심사기준을 고시상의 지침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.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4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허가지침이 기재되었습니다. 별표 24의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① 전략물자 허가신청 거부대상
- ②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허가신청 거부대상

[KPMG 의견]

국내 수출업체들은 ①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(고시 별표 2-2)에 자사의 수출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 특히 ②새롭게 변경된 통제기준에서는 HS 코드 6단위를 함께 병기하고 있으므로 검토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지만, 자칫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에, 전략물자 허가기준에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HS 코드를 비롯하여 품명 및 기술사양을 병행 검토하여야 합니다. ③ 특히 공작기계, 화학물질의 경우 별표 2-2에서도 HS 코드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물품의 용도와 상세 사양에 기초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삼성 KPMG TAX6 본부



강길원 부대표(본부장)

T. 02-2112-0907



백승목 전무

T. 02-2112-0982



김상훈 전무

T. 02-2112-7939



김태준 상무

T. 02-2112-0696



윤용준 상무

T. 02-2112-0277



김태주 전무(관세)

T. 02-2112-7448



오영빈 상무(관세)

T. 02-2112-0435

home.kpmg/socialmedia



home.kpmg/kr/ko/home/services/tax.html

[Privacy](#) | [Legal](#) | [Unsubscribe](#)

27th Floor, Gangnam Finance Center, 152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Korea

©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.,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,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. All rights reserved.

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.